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2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조정훈・인요한・최수진

유상범 · 김대식 · 김용태

서지영 • 이인선 • 정성국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개정안제44조의3(이행강제금)①・②제44조의3(이행강제금)①・②(생 략)(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 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 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 다.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
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다.

<u><삭 제></u>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삭 제>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u> 수한다</u>.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 · 징수 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삭 제>